

2021년 디지털금융 감독방향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2021. 4. 2.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Contents

- 1 금융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의 사전관리 강화
- 2 디지털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체계적 규제환경 조성
- 3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및 핀테크 발전 토대 구축
- 4 지속 성장가능한 전자금융업 생태계 조성
- 5 금융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발전환경 조성
- 6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 7 새로운 개인신용정보 보호체계의 정착률 유도

들어가는 말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

디지털혁신을 선도하는 감독체계 확립

- 금융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의 사전관리 강화
- 디지털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체계적
규제환경 조성



디지털혁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및
핀테크 발전 토대 구축
- 지속 성장가능한
전자금융업 생태계 조성
- 금융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발전환경 조성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체계적 규제환경 조성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 새로운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의 정착육 유도



1 금융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의 사전관리 강화

디지털금융 관련 신생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금융안정 도모



사이버 리스크 대응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리스크 분석

디도스(DDOS) 등 사이버 공격 관련 비상 대응훈련 점검



제3자 리스크 예방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등 주요 수탁자에 대한 감독 방안 마련



비대면 신원확인·인증 안전성 확보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금융인증서 현황 점검

명의 도용 비대면 계좌 개설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비대면 실지명의 확인 방법 및 절차 검토

1 금융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의 사전관리 강화, 계속

IT 인프라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독 추진 및 규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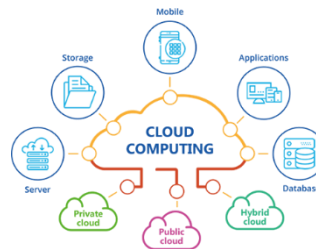


망분리 규제정비

전산센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

(참고)

언택트 근무환경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의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
하도록 원격접속 허용('20.11월)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 합리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정비 방안 검토

(참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수요 변화에 맞춰 서비스 이용 가능 범위
확대('19.1월)

2 디지털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체계적 규제환경 조성

디지털금융의 양적 성장에 맞춰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금융회사 등 책임강화

약관 개정 등 통해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등 책임범위 확대

전금법 개정안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 (무권한거래)에 대해 금융회사 등의 입증 책임 부과
------------	--



사이버 보안 관심 제고

전자금융사고 관련 경영진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 제고

※ 보안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관심 등 필요(cf. 종전 5.5.7 규정 일몰)

전금법 개정안	이사회가 금융보안 중요 사안을 결정 하고, 금융보안책임자(前 정보보호최고 책임자)의 역할과 위상 제고
------------	--

2 디지털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체계적 규제환경 조성, 계속

시장 참여자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체계적 규제환경 조성

디지털금융 협의회 세부과제 검토

이용자 피해 및 시장질서 저해행위 차단



빅테크 규율



소비자 보호

- 각계 전문가·현장 목소리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 맞게 기존규제 정비

- 업권간 규제격차 해소

- 빅테크 금융진출시 우려되는 금융 이용자 피해 및 시장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 확보

3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및 핀테크 발전 토대 구축

디지털 금융혁신에 발맞추어 레그테크 발전을 지원



레그테크 포럼 운영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외부
의견 청취

레그테크 기업과 기술 수요가 있는
금융회사 사이의 가교 역할 수행



데이터 제공(Open API 등)

금감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외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예) 제재내역, 법령해석 등을 위주로
공개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업 모델 개발(Open API 등)

3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및 핀테크 발전 토대 구축, 계속

금융회사가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등 핀테크 기술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 최우선 고려



블록체인 포럼 운영

블록체인 활용사례 등을 공유하고
외부의견 청취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도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금융회사, 업체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논의 지속



가상자산 투기과열 문제 해결

가상자산 투기과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침에 지속적인 관심 요청

- (참고)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지침
-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영업·업무제휴 등 관여 금지
 -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4 지속 성장가능한 전자금융업 생태계 조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공정한 감독체계 구축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유도



건전성 감독 강화

경영지도기준 준수에 대한 감독 강화

소액 후불결제 관련 신용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공정경쟁 및 소비자보호 강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하에 전자금융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정비

이용자 예탁금의 안전한 보호체계 확립

4 지속 성장가능한 전자금융업 생태계 조성, 계속

새로운 시장 진입자 및 기존 업체의 원활한 시장 안착 및 규제준수 지원



전금법 개정 이후 인허가 방안 수립

신설 업종에 대한 허가 및 등록 심사
기준 마련

업종 통합 및 간소화 관련 기존
업체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



규제준수 지원 위한 소통 강화

전자금융업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실시

전자금융업 등록 체크리스트 마련,
FAQ 등 안내서 배포

5 금융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발전환경 조성

엄정한 진입심사 등을 통해 데이터산업의 건전한 발전환경을 조성

新산업에 대한 엄정한 진입심사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전문
CB사 허가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

매월 허가신청을 접수받아 수시로
허가 부여

주요 허가 일정

- (4.16) 신규 마이데이터 허가 설명회 개최
(CB 허가는 개별 컨설팅)
- (4.23) 허가신청서 접수 개시(매월 접수)
- (5월말~) 업무개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업체부터 허가 부여(수시)

데이터산업 책임성 확보

CB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대응하여
경영부수업무 감독을 강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최초로 개인
CB사 등에 대한 최대주주 자격심사
실시

채권추심·대출채권매각 가이드라인 개정

채권추심법 등 법령 개정사항과 규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가이드라인 개정

수요조사를 거쳐 금융업권별 개정
수요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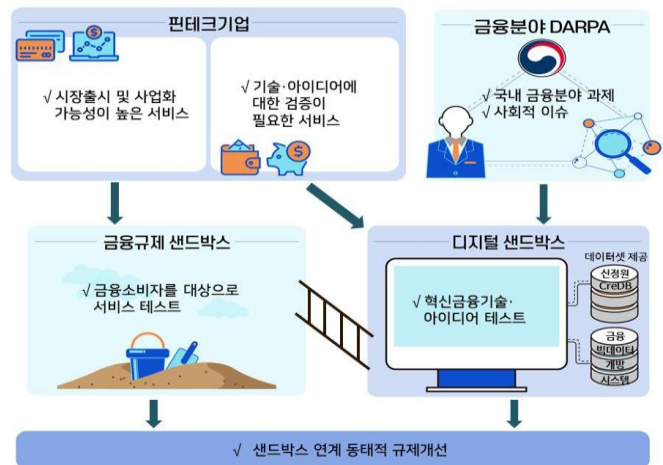


6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초기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 테스트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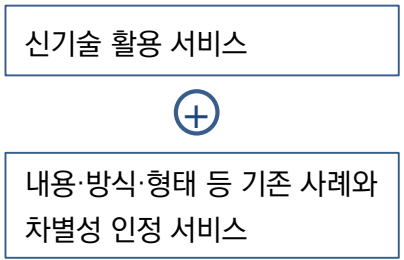
디지털샌드박스(가칭) 도입 지원

현행 샌드박스 지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virtual 테스트 환경 구축



(출처 : 금융위)

혁신성심사 기준 유연화



혁신성 인정
세부 심사기준 제시



6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계속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해외진출 정보 지원

성과지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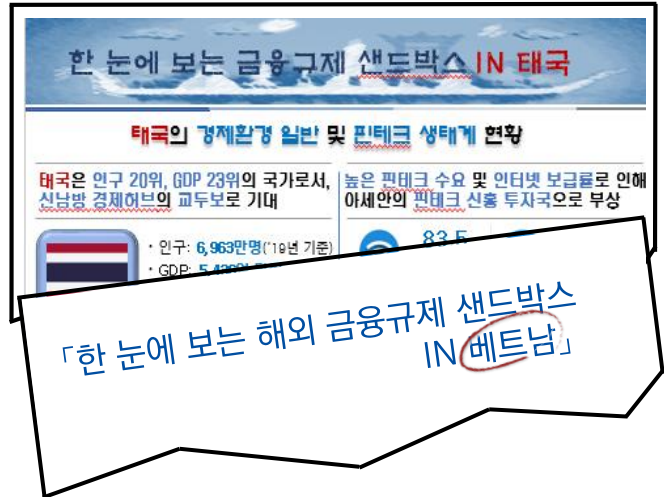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서비스 운영성과 지표를 충실히 마련·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심사

(예시) 사업자 성과지표 항목

-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이용자 수, 이용 금액 등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 시장 영향 :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거나 또는 신규시장이 창출되는지 여부
- 소비자 편익 : 비용 절감 또는 금융 혜택의 정도

해외사례 소개

샌드박스를 도입한 국가의 핀테크 사업환경 및 샌드박스 제도 등 정리



7 새로운 개인신용정보 보호체계의 연락처 유도

금융데이터 산업 인프라에 대한 감독 및 금융소비자의 권리보장 강화 등

금융데이터 활용·관리실태 감독강화

데이터
전문기관

- 데이터 결합업무의 적정성 여부
데이터 송·수신의 적정성
결합데이터 관리절차 적정성
데이터 이용기관의 정보보호 수준평가 등

금융회사

- 가명·익명처리 행위규칙 준수여부
가명·익명정보의 재식별 여부
가명정보의 안전한 보관여부
데이터 활용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 등

권리보장 운영실태 점검 및 금융회사 자율규제 지원

- 신용정보법상 규정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이행여부 점검
(예시)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삭제권, 전송 요구권 및
자동화평가에 대한 설명요구권 등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법·제도의 조기정착 및 명확한 기준을 제시
-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새로운 시장 Player에 대한
감독을 통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7 새로운 개인신용정보 보호체계의 연락처 유도, 계속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및 알고하는 동의제도 정착을 위한 점검강화

상시평가(대상 : 약 3,653개사)

형식적 동의관행 개선을 통한 新 동의제도 정착지원

1 금융회사 자체평가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주관 정보보호 수준 자체평가
(9개 대항목, 143개 세부평가항목)

2 금융회사별 평가점수 및 등급부여 (금보원)

· 평가결과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점수·등급부여

3 감독·검사 활용 (금융감독원)

· 상시평가 결과를 현장점검, 테마검사시 활용
· AI, 빅데이터활용 등 변화된 금융환경을 고려한 상시평가체계 고도화 추진(예정)

- 금융감독당국, 각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여 권역별 표준 동의서 개편
- 상품소개 등 선택적 사항에 대한 동의 획득시 사생활 침해 위험, 제공받는 혜택 등을 고려한 동의등급제도 시행
- 금융회사의 비대면 업무 확대에 따라, 웹·모바일 등 온라인상 동의제도 운영현황 점검 (예시) 필수·선택동의 구분 미흡, 고지사항 누락 등